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방사선·방사능 감시기의 설치·운영을 실제 감시기 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 및 제20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